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의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0 .

발 의 자 : 김의겸 · 박희승 · 오세희
윤준병 · 허성무 · 이정현
이건태 · 조인철 · 한정애
김우영 · 朴芝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,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 기업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.

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

려는 것임(안 제58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의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
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52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
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
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 중 “기업에”를 “기업, 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새만금투자진흥지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

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에 취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세제 및 자금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 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(이하 “입주외국인투 자기업”이라 한다) 및 투자진 흥기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 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 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 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,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	제58조(세제 및 자금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기업, 투자진흥기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